

의안번호	제 호	의결사항
의결 연월일	20 . . (제 회)	

사립학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제출자	국무위원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제출연월일	2024.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사립학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사립학교법」 제25조의3 제1항에 따라 임시이사가 선임된 학교법인을 정상화하는 경우 사학분쟁조정위원회의 심의 절차를 거치도록 하고 있음. 이에, 전문성과 자율성이 있는 사학분쟁조정위원회가 해당 학교법인 및 설치·경영하는 학교의 여건 등을 고려한 합리적인 정상화 관련 의견 청취 기준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함.

3. 주요내용

사학분쟁조정위원회의 학교법인 정상화 심의 관련 의견 제출·청취 기준에 관한 조항을 삭제함(현행 제9조의7제5항 삭제).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0000. 00. 00. ~ 00. 00.)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신설·폐지 등, 없음

대통령령 제 호

사립학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사립학교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의7제5항을 삭제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의견 청취에 관한 적용례) 제9조의7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당시 법 제25조의3제1항에 따른 조정위원회의 심의가 계속 중인 경우에도 적용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9조의7(조정위원회의 회의) ① ~ ④ (생략) ⑤ <u>조정위원회는 제4항 후단에 따라 의견 제출·청취의 절차 및 방법을 정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지켜야 한다.</u> 1. <u>제4항제1호에 따른 협의체의</u> <u>구성원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있는 경우: 제4항제1호에 따른 협의체에게 추천하도록 하는 후보자 수가 제4항에 따라 추천받는 전체 후보자 수(동일한 후보자가 있더라도 제4항 각 호에 따른 추천 주체가 다른 경우에는 별개로 계산한다)의 과반수 미만이 되도록 할 것</u> <u>가. 법 제20조의2에 따라 임원취임의 승인이 취소(임원 간의 분쟁을 이유로 취임의 승인이 취소된 경우는 제외한다)된 적이 있는 사람</u> <u>나. 법 제54조의2에 따라 해</u>		제9조의7(조정위원회의 회의) ① ~ ④ (현행과 같음) <u><삭 제></u>		

<u>임된 적이 있는 사람</u> <u>다. 법 제61조에 따라 파면의</u> <u>징계를 받은 적이 있는 사</u> <u>람</u> <u>라. 그 밖에 해당 학교법인,</u> <u>다른 학교법인 또는 해당</u> <u>학교법인이나 다른 학교법</u> <u>인이 설치·경영하는 학교</u> <u>의 운영에 중대한 장애를</u> <u>야기한 것으로 조정위원회</u> <u>가 인정한 사람</u> <u>2. 제1호 외의 경우: 제4항제1호</u> <u>에 따른 협의체에게 추천하도</u> <u>록 하는 후보자의 수가 제4항</u> <u>에 따라 추천받는 전체 후보</u> <u>자 수(동일한 후보자가 있더</u> <u>라도 제4항 각 호에 따른 추천</u> <u>주체가 다른 경우에는 별개로</u> <u>계산한다)의 과반수 이상이</u> <u>되도록 할 것</u> ⑥ (생 략)	⑥ (현행과 같음)
--	-------------------

< 의안 소관 부서명 >

교육부 사학분쟁조정위원회지원팀	
연 락 처	(044) 203 - 6903